

#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3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통해 출향인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·확대하고, 구미의 우수 농·축산물 및 G-푸드 판매로 구미에서 생산한 농·축산물의 우수성 및 브랜드 홍보를 통해 구미시 이미지 제고와 농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.
- 나.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  - 1) 추진근거
    - 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   - 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   - 다) 「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3조
    - 라) 「구미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
    - 마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2) 필요성 : 출향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미의 우수 농·축산물, G푸드 판매로 지역 홍보 및 매출 확대를 도모하며, 산업·문화·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시정 홍보로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, 기획·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업무 전반

- 1)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 및 운영
- 2)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행사 전반에 관한 사전 준비 및 진행
- 3) 사전판매 시스템 구축 및 예약 접수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4. ~ 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29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행사운영비	과제추진비	간접비	비고
290	235	11	44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('26.2.25.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### 3. 부서의견

-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3) 「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3조
- 4) 「구미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
- 5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### 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### 다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**제6조(의회 동의)**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## □ 「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**제23조(농업인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)**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업인장터(이하 “장터”라 한다.)를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,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·소포장·홍보·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농산물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**제3조(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)** ① 시장은 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구미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·개설·운영, 컨설팅
2.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구미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
3. 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구미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
4. 농특산물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

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구미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·운영,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농특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)**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구미시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, 민간 단체, 기업 등과 농특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장터, 전시·박람회, 시식 및 나눔행사 등 홍보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(예산)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농특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구미시 관내 학교급식·단체급식 등 사업자,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그 밖에 식품관련 사업자 등과 구미시 농특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## 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#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2026년도 고향사랑 네트워크 구축 위탁 시 사업 운용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설치·제작·대여 등 행사운영비는 2025년 10월 기준 행사운영 시 단가로 산정하였음.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출	○ 행사운영비	235	235	235	235	235	1,175
	○ 과제추진비	11	11	11	11	11	55
	○ 간접비	44	44	44	44	44	220
	계	290	290	290	290	290	1,450

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국비		-	-	-	-	-	-
도비		-	-	-	-	-	-
시비		290	290	290	290	290	1,450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290	290	290	290	290	1,450

5. 부대의견 :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
6. 작성자 : 총무과 자치행정팀 이유림(☎ 480-6762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내역	사업비	비고	
행사 운영비	인건비	○ 행사 총괄 감독 및 운영 지원 스태프 ○ 주·야간 경호, 홍보·프로그램 인력 ○ 개막식 아나운서, 이벤트MC, 의전도우미	18,000	
	프로그램	○ 개막 퍼포먼스, 협약식 전자서명 ○ 무대 이벤트·초청가수, 버스킹 공연 ○ 구매 영수증 이벤트, 관객 참여행사	20,000	
	시스템	○ 트러스 구조물 및 커버 ○ 무대 설치물, 음향·조명 시스템 ○ 특수효과, 영상·LED·스위치 시스템 ○ 발전차 및 전기 간선 등	53,000	
	렌탈	○ 3×3부스 35동, 5×5부스 4동 ○ 부스 비품(테이블, 의자, 냉장고 등) ○ 객석의자, 파라솔, 그늘막, 우천대비	25,000	
	제작물	○ 메인 조형물, 행사장 조성·부스 제작 ○ 사전 홍보용·현장 인쇄물	13,000	
	운영	○ 행사보험, 무대 대관료 ○ 행사장 정리(폐기물 반출 등)	7,500	
	마케팅홍보	○ 온·오프라인 홍보 전반(전광판 등) ○ TV 및 라디오 스폷 광고	45,000	
	방송연계	○ TV 생중계 프로그램(6시 내고향 등)	18,000	
	사전판매	○ 사전판매 시스템 구축	15,000	
	용역대행	○ 일반관리비 등	20,548	
	<b>소계</b>		<b>235,048</b>	
과제 추진비	인건비	○ 사전판매 보조인력	6,000	
	위원수당	○ 전문가 활용(평가위원회)	2,100	
	국내여비	○ 관내·외 출장	1,700	
	회의비	○ 업무추진	500	
	사무관리비	○ 소모용품 구입	1,150	
		<b>소계</b>		<b>11,450</b>
간접비	일반관리비		20,000	
	부차가치세		23,502	
<b>합계</b>			<b>290,000</b>	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손 혁 영
	팀 장	우 정 현
	담 당 자	이 유 림 (480-6762)